**프리랜서 용역계약서**

계약건명 : 캐릭터 일러스트 외주  
계약기간 : 일러스트 21장 완성까지.

정지웅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는 ○○○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에게 용역업무를 의뢰 하면서 다음과 같이 `프리랜서 용역계약서`를 체결하고,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 본 계약은 『갑』과 『을』간의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질권설정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'  
  
제1조(계약의 목적)   
본 계약은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 
  
제2조(계약의 범위)  
"을"은 "갑"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.  
1. 캐릭터 총 7명  
2. 캐릭터 한명당 3장의 일러스트  
3. 총 21장의 일러스트 완성  
  
제3조(계약기간 및 계약금액)   
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05월 24일부터 일러스트 완성까지 한다.  
② 총 계약금액은 금1050000원정으로 한다.③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%, 작업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잔금70%를 지급하며, 지급방법은 “을”이 정한 기업은행(계좌번호: 055-073468-01-019)로 입금한다.  
  
제4조(납품)  
“을”은 작업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 납품키로 한다.  
  
제5조(협조의무)   
“갑”은 “을”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작업수행을 위한 “을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  
  
제6조(비밀유지)   
“을”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.  
  
제7조(품질)   
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“갑”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,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30%만을 지급하기로 한다.  
  
제8조(계약의 해지)   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 
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 
  
제9조(해지의 효과)   
① 전조 제1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“갑”은 잔금의 10%를 “을”에게 지급함으로써 “을”의 용역수행 대가에 갈음한다.  
②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귀책사유가 “을”에게 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(총 계약금액의 30%) 외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나머지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다.  
③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,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귀책사유가 “갑”에게 있을 때에는 “갑”은 잔금(총 계약금액의 70%) 중 50%를 용역수행의 대가로 “을”에게 지급한다.  
  
제10조(손해배상)   
“을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의 50%로 정한다.  
  
제11조(해석)   
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.  
  
제12조(소송관할)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  
  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..  
  
  
2016년 05월 24일  
  
「갑」   
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70-11  
정지웅  
  
「을」   
○ ○ ○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